

충주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2009. 3. 30(월)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제안자	비고
1027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황병주 의원	
1034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장 (지역개발과장)	
1035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장 (상수도과장)	

산업건설위원회

#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안 일자	회 부 일자	상 정 일자	의 결 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 3.17.	2009. 3.17.	2009. 3.24.		황병주 의원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 3.17.	2009. 3.17.	2009. 3.24.	2009. 3.24.	지역개발과장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9. 3.17.	2009. 3.17.	2009. 3.24.	2009. 3.24.	상수도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부응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경노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상향조정과 조례로 위임되었던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일부규정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마련된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를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에 반영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접근 및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상수도행정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함  
(안 제3조 제4항 제8호 신설)

#### **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 60%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안 제55조 제1항 제5호)
-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 삭제  
(안 별표19 제12호)

#### **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도사용자 등의 필요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3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안 제26조)
-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 (안 제32조)

- 수도요금 감면규정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추가 (안 제40조)
-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안 제44조)
-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그 외의 징수금 등은 5년으로 함(안 제52조)
- 수도요금 부과의 업종 중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총 5업종을 4업종으로 단순화) [별표 2, 3]
- 상수도 요금 현실화 접근을 위한 요금인상  
(현행 평균판매단가 646원을 682원으로 5.6% 인상)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난 3월 17일자로 회부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자는 사항임
-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를 의무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0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의 경우 2008년 12월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은 주차장 이용시 인적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어 파악된 통계는 없으나 이용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할인액 또한 1급지 경우 1,100원, 2급지의 경우 750원으로 크지 않아 주차장운영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는 보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 고궁 등의 무료입장, 기차요금 할인 등과는 달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경제력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65세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는 노인에게만 교통비 성격의 혜택이 부여되는 측면도 있어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적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난 3월 17일자로 회부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55조 제1항 제5호의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 60%이하에서 7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일환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자 시행령 제84조를 개정한데 따른 사항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신·증축으로 인한 부지난 해소 및 공장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 등 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19호에 따른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 행위중 제12호는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시행령에 신설(별표20 제1호 차목)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난 3월 17일자로 회부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그간 지방 상수도의 수도 요금, 누수,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과 관련한 상당한 민원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열악한 상수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 수도계량기 실험비용 부담주체(안 제32조)**

현재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기 이상 시험을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2조에 의거 계량기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음

수도요금의 과다부과로 인한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시험 비용을 계량기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 조항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규정으로,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때만 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도록 개선하는 것은 그동안 수도계량기의 이상 등으로 인한 실험비용 부담까지 져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2) 누수 관련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40조 제1항 제2호)**

수도 사용자가 물이 새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나 고의, 과실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수도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모든 책임을 수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고질적으로 반복된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3)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44조)**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은 상수도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누수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복구로 시민 불편해소, 유수율을 증대시켜 다가오는 물부족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사료됨

#### 4) 상수도 요금 인상 (별표 2)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 평균 880mm보다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간 평균은 세계 평균의 13%에 불과하며,

세계기상기구(WMO)가 2025년에 6억 5천 300만명 내지 9억 400만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2000년 “물부족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오고 있는 바, 누수 수도관을 교체하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중수도 활용 등의 절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음.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은 2008년도 상수도요금의 동결로 인해 톤당 646원으로 생산단가인 톤당 752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1,664백만원으로 16.48%의 인상요인이 있음.

#### 수도요금의 인상은

물 사용량을 줄여 물 부족 사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급수수요의 충족, 사용자의 사용요금의 부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최소폭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는 지나,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을 둔화,  
실물경제의 위축, 실업자 증가 등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는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의 공공요금 인상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이 평상시 보다 클 수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질의 : 노인의 기동성을 고려하여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할 용의는?
  - 답변 : 공용주차장 규모로 인하여 곤란함
- ▶ 질의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할인 적용할 용의는?
  - 답변 : 공용주차장 협소의 문제가 있음.

### 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질의 : 시행령이 '08.1.8일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늦게 한 사유는?
  - 답변 : 시행령은 '08.1.8일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08.9.25일 이었음.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질의 : 상수도의 톤당 원가는?
  - 답변 : 광역상수도 394원, 단월정수장 126원

- ▶ 질의 : 상수도의 생산원가에 비해 요금이 비싼 이유는?
  - 답변 : 생산원가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원가임
- ▶ 질의 : 경제여건을 감안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출 용의는?
  - 답변 : 08년에도 미인상으로 늦추기는 곤란함

## 6. 심사결과

### 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보류

《사유 / 요금 감면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함

### 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